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해제 및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, 해제 공고하고,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3502호 일부를 조정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8일

서울특별시 시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○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: 6개소

대상지역			면적(㎡)	허가대상
합 계			167,199.97	
서울특별시	강동구	천호동 338 일대	24,975.25	지목 「도로」 한정
	광진구	자양동 226-1 일대	19,835.72	
		광장동 264-1 일대	34,122.5	
		구의동 587 일대	20,358.1	
	동작구	동작동 102-8 일대	21,211.0	
	서초구	서초동 1506-6 일대	46,697.4	

※허가대상 도로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목으로 함.

○ 지정기간 :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

2.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

- 공공재개발 미선정지(1개소), 신속통합기획(재개발) 후보지 미선정지(1개소)
신속통합기획(재개발) 사업시행자 지정(1개소),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(2개소)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470,339.8	
서울특별시	강 동 구	천호동 338 일대	32,330.0	공공재개발 미선정
	성 동 구	사근동 212-1 일대	21,484.0	신통기획(재개발) 후보지 미선정
	양 천 구	신월동 913 일대	119,136.8	신통지획(재개발) 사업시행자 지정
	중 구	신당동 156-4 일대	297,389.0	모아타운 대상지 철회
		신당동 50-21 일대		

- 해제일 : 2025년 8월 28일

3. 허가구역 조정(구역변경) 대상지역

1) 구역변경 2개소

- 신속통합기획(재개발) 선정지(2개소)

대상지역	면적(㎡)			비 고
	변경전	변경후	증감	
종로구 창신동 23-606 일대	133,846	143,148.7	증 9,302.7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
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	81,370.9	92,190.8	증 10,819.9	

- 지정기간 :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

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'25. 9. 2.) / 제척필지 효력발생일('25. 8.28.)

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조정 공통사항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5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6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- 붙임 1 (신규지정 6개소)
- 붙임 2 (해제지역 5개소)
- 붙임 3 (구역변경 2개소)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

■ 呼吸

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

지적선

